

대전지방법원 2020. 4. 29 선고 2019가단2274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(D생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5. 8. 4. 접수 제15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김양규

별지